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2001. 3.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지방세법 제238조 및 구미시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중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 및 건축물.

나. 고시대상(131.772㎢)

- 동 지 역 : 19개동127.452㎢

(원평 · 지산 · 도량 · 봉곡 · 부곡 · 선기 · 수점 · 남통 ·
형곡 · 송정 · 신평 · 비산 · 공단 · 광평 · 사곡 · 상모 ·
임은 · 오태 · 신통 · 구평 · 황상 · 인의 · 진평 · 시미 ·
임수 · 양호 · 거의 · 옥계 · 구포 · 금전동 전지역)

- 읍면지역

· 선산읍 : 4.320㎢(완전 · 동부 · 이문 · 노상 · 교 · 화조리 일부)

3. 관계법령

가. 지방세법 제235조, 제238조(부과징수 및 부과지역 고시)

- ①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시·군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나. 구미시세조례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부과징수 방법

가. 과세기준일 및 납기

- 토 지 : 매년 6월 1일기준 10월16일 ~ 10월31일 납기
- 건 축 물 : 매년 5월 1일기준 6월16일 ~ 6월30일 납기

나. 세 율 : 과세시가표준액(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0분의 2

다. 납세고지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5. 연도별 도시계획세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재산세분		종합토지세분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계	582,686	28,892,873	314,351	15,919,685	268,335	12,973,188
1996	101,322	4,551,795	52,585	2,278,587	48,737	2,273,208
1997	107,963	5,710,236	58,942	2,923,033	49,021	2,787,203
1998	117,774	6,003,462	62,359	3,425,587	55,415	2,577,875
1999	125,607	6,194,969	69,290	3,520,059	56,317	2,674,910
2000	130,020	6,432,411	71,175	3,772,419	58,845	2,659,992

6. 사권제한 토지 감면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0 감 면 내 역			
	필 자 수	면 적	과 표	세 액
계	5,026	1,753,042	17,687,349	53,060
동 지 역	2,319	1,380,255	10,191,806	30,575
선 산 읍	504	26,669	2,770,879	8,312
고 아 읍	2,203	346,118	4,724,664	14,17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단위 : ㎡)

구 분	지 역 명	면 적	비 고
총 계	1개읍19개동	131,772	
읍 지 역	완전, 동부, 이문, 노상, 교리, 화조리 일부지역	4,320	붙임고시도면 및지번별조서 참조
동 지 역	원평, 지산, 도량, 봉곡, 부곡, 선기, 수점, 남통, 형곡, 송정, 신평, 비산, 공단, 광평, 사곡, 상모, 임은, 오태, 신동, 구평, 황상, 인의, 진평, 시미, 임수, 양호, 거의, 옥계 구포, 금전동 전지역	127,452	붙임고시도면 및지번별조서 참조